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

Policy to integrate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within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 정책문은 제20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회의(파리, 2015) 결의안 20 GA 13에 따라 채택되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문 번역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본 책의 내용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

I. 정책 필요성

1. 당사국은, 1972년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¹⁾의 촉진과 평화와 안보의 증진²⁾이라는 유네스코 사명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³⁾에 명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 의제 및 기존 국제 인도주의 표준, 그리고 기타 다자간환경협약(MEAs)⁴⁾과의 정책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발전과 우리 삶의 질에 기여하는 적절한 활동을 통해 세계유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존과 지속가능성, 개발 사이에서 적절하고 공정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⁵⁾
2. 인구 및 기후가 변화하고 불평등이 증가하며, 자원이 감소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세계유산협약」이 표방하는 목표를 비롯한 ‘세계유산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와 필요성의 범주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분명해졌다.
3. 「세계유산협약」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지닌 대체 불가능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확인, 보호, 보존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제시하고 전승함으로써, 그 자체로 지속가능발전과 세계인의 웰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⁶⁾ 이와 동시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시스템 안에 신중하게 통합되어, ‘환경의 지속가능성, 포용적 사회발전, 포용적 경제발전’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이 강화되고 평화와 안보⁷⁾가 증진된다면, 이는 세계유산에

1) 핵심용어의 설명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2) 이는 유네스코 중기전략에 명시된 유네스코의 두 가지 핵심 목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unesco.org/new/en/bureau--of--strategic--planning/resources/medium--term--strategy--c4/>.

3)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 문서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69/L.85&Lang=E.

4)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5) 「부다페스트 선언」에서 인용. 이 선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hc.unesco.org/en/documents/1334>.

6) 유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이 점을 인식하고,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운데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이라는 11번 목표의 세부목표로 포함시켰다.

7) 지속가능발전의 이러한 틀과 영역은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서 빌려온 것이다.

혜택을 가져오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4. 따라서, 각 당사국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도록 유산의 보존 및 관리 전략을 세움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모든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유산의 고유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증진하며, 세계유산이 주는 공동의 혜택을 공동체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세계유산협약」에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통합시키면, 특히 국가 차원에서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1000건 이상 등재된 세계유산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혁신적 모델들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이자 ‘모범 사례의 표준 설정자’로서 세계유산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의 도입이 불가피한 이유는, 세계유산 부문이 지속가능발전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세계유산과 공동체가 상호 호혜적 혜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계유산 그 자체는 보다 폭넓은 변화의 ‘촉매제’가 아니라 ‘희생양’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 일반조항

6. 당사국은, 적절한 방법으로 지속가능발전 관점이 통합된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전략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웰빙도 포괄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7. 그러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중요 원칙들에 기반해야 하며, 이 원칙들은 「유엔 헌장」과 2030 의제, 특히 후자의 제10-12항⁸⁾에 비춰 해석되어야 한다:
 - i. **인권**⁹⁾: 「유엔 헌장」 및 널리 인준된 국제인권문서에 언급된 인권은 인간 존엄성, 평화, 지속가능발전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본적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세계유산협약」을 이행할 때 이러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ii. **공평성**: 모든 사회의 불평등 해소는 포용적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비전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8) 이들 원칙은 유엔 작업반(UN Task Team) 보고서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un.org/millenniumgoals/pdf/Post_2015_UNTTreport.pdf.

9) 인권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제3장에서 포용적 사회발전의 구성요소로 다루진다.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통해 차별과 배제 같은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iii. **장기적 전망을 통한 지속가능성:** 폭넓게 규정된 지속가능성은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에 내재되어 있다. 지속가능성은 발전의 모든 측면을 위한, 그리고 모든 사회를 위한 근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의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은 세대 간 평등과 정의를 비롯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적합한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장기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8. 또한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에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당사국은 수많은 세계유산의 사회-생태학적 시스템 안에서 생물다양성과 지역 문화의 밀접한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과 지역 문화는 인간과 환경이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해온 것으로서, 지역사회 회복력의 기본 요소를 이룬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모든 정책이 반드시 생물다양성과 지역의 문화적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 지속가능발전의 모든 측면은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각각의 다양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각 측면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강화하며, 어느 한 측면도 다른 측면에 우선하지 않고 각각의 측면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당사국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추구 사이에 적절한 균형, 통합, 조화가 이뤄지도록 세계유산 관리 시스템 내에서 거버넌스의 틀을 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주민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권리보유자가 전적으로 존중받는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합의된 지표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제안에 대해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관 간 조정기구 및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10. 더 나아가 당사국은, 수많은 세계유산과 관련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산 자체를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한 수준의 활동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일부 측면이 다른 측면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특히 사회-생태학적 시스템의 통합을 고려해, 더 넓은 지역적 계획의 틀 안에 세계유산 보전 및 관리 방식을 통합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충구역(및 기타 유사한 수단)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또한 완충구역은 유산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다른 관련 공동체, 그리고 유산 그 자체를 위해 상호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획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정책문은, 각 개별 조항이

모든 세계유산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추후 마련되어야 하기에, 일반 지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1.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통합시키려면, 여러 학제 간, 부문 간에 폭넓은 범위에서 실무자, 기관,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여기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학술 연구 및 조사를 촉진하고, 수단과 지침을 개발하며, 연수 과정을 만들고, 각 집단에 맞는 다양한 학습환경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그 과정에서 비정부기구의 잠재적 기여도도 고려해야 한다. 문화 및 생물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서로 연결지으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세계유산 보존에 더 많이 참여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주어지는 잠재적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이 정책문은 분명 세계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원칙은 ‘1972년 협약’ 제5조의 정신에 따라 모든 일반적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도 적용된다. 더욱이 이 정책문은 주로 당사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조항을 이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무국, 자문기구, 기타 관련 기관의 기여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III.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

13.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려면 세계유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유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약 이행 당사국은 평화와 안보의 증진과 함께, ‘환경의 지속가능성’, ‘포용적 사회발전’, ‘포용적 경제발전’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¹⁰⁾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제시된 “지구, 인간, 번영, 평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환경의 지속가능성

14. 「세계유산협약」은 인간의 웰빙에 필수불가결한, 뛰어난 생물다양성, 지질 다양성, 그 밖의 빼어난 자연의 특징들을 평가하고 보존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특히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그러나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문화경관을 포함해 세계 문화유산 및 복합유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협약 이행에 있어 당사국은 다른 다자간환경협약과의 정책 일관성 및 상호

10) 인용된 문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2-3쪽 참조. 이 문서에서 언급된 다섯 번째 영역 “파트너십”(partnership)을 나타내는 “p”는 유산보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의 수단인 「세계유산협약」 그 자체라 볼 수 있다.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천연자원의 손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적 가치를 보장하며, 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과의 책임감 있는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생물학적,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생태계 서비스 및 혜택

15. 당사국은 세계유산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과 그 바깥의 보다 넓은 주변 지역에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생태계 서비스 및 혜택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문화적 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되도록 보장해야 한다.¹¹⁾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을 해야 한다:

- i. 복합유산과 문화유산을 포함한 모든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생태계 서비스 및 혜택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ii. 세계유산과 그 주변 지역을 보존하고 관리할 때, 환경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모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적용하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교통, 기반시설, 광산업, 폐기물 관리 같은 분야에서 기획안을 만들 때 환경적·사회적·문화적 영향평가를 추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의 복원력 강화

16. 재해 위험과 기후변화의 영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사국은 세계유산이 보호되어야 할 ‘자산’이자, 재해의 영향에 저항하고, 그 영향을 흡수하고, 그 영향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와 그 유산의 능력을 강화하는 ‘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재해 위험¹²⁾과 기후변화에 관한 다자간 합의에 따라 당사국은 다음을 해야 한다:

- i. 유산 관련 생태계 서비스, 전통 지식과 관행, 강화된 사회적 결속을 통해 재해의 위험을 줄이고

11) 최근에 발표된 다음 논문은 인간의 웰빙에 대한 세계자연유산의 기여를 포함해, 이 유산이 주는 혜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 분석을 제시했다: Osipova, E., Wilson, L., Blaney, R., Shi, Y., Fancourt, M., Strubel, M., Salvaterra, T., Brown, C. and Verschuuren, B. (2014). The benefits of natural World Heritage: Identifying and assessing ecosystem services and benefits provided by the world's most iconic natural places. Gland, Switzerland: IUCN. vi + 58 pp: <https://portals.iucn.org/library/efiles/documents/2014-045.pdf>.

12) 「세계유산협약」의 틀 안에서, 재해 위험을 다룬 자료로는 다음이 있다: *Strategy for Reducing Risks from Disasters at World Heritage Properties* (2007) (<http://whc.unesco.org/archive/2007/whc07-31com-72e.pdf>); *Policy Document on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World Heritage Properties* (2008) (<http://whc.unesco.org/en/news/441/>).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세계유산이 지닌 본연의 잠재력을—보존·관리 전략 내에서—인식하고 증진한다.

- ii. 대중의 인식 제고, 연수, 교육을 포함한 구조적, 비구조적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및 관련 공동체의 재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복원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과 그 주변 환경이 지닌 취약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특히, 구조적 조치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iii. 세계유산 관리 시스템과 보존 관행의 범위 내에서 “더 나은 재건”(Building-back better)을 위한 재해 후 복구전략과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를 강화한다.

포용적 사회발전

17. 「세계유산협약」 제5조는 당사국에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공동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은 ‘포용적 사회발전’이 이 조항의 이행에 있어 핵심을 이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사국은 성평등에 대한 책무를 비롯해 지역사회 및 관련 공동체,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완전한 포용과 존중, 평등이 포용적 사회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유산지역 안과 그 주변에서 삶의 질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유산지역을 방문하거나 그 안팎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해관계자인 다른 공동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용적 사회발전은 포용적 거버넌스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포용성과 평등에 기여

18. 당사국은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가 문화다양성, 포용성, 공평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지역사회를 위해 다음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안팎에서 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 개입, 실천을 약속하고 수행해야 한다:
- i. 나이, 성별, 장애, 인종, 출신,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다른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의 능력, 기회, 존엄을 향상시킨다.
 - ii. 나이, 성별, 장애, 인종, 출신,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다른 지위에 상관없이 공평성을 증진하고, 모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배제를 줄인다.
 - iii. 지역사회의 문화적·환경적 장소지식(place-knowledge)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고 포용한다.

삶의 질 향상과 웰빙

19. 세계유산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특히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웰빙을 증진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당사국은 세계유산의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다음을 해야 한다:

- i. 세계유산 안팎의 지역사회가 필수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ii. 모두를 위해 (물과 위생적 환경의 제공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포함한) 환경보건을 촉진하고 증진한다.
- iii. 세계유산 그 자체가 식량, 깨끗한 물, 약용식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 직접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물자의 보호 및 공평한 이용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도록 보장한다.

인권의 존중과 보호와 증진

20. 「유네스코 헌장」 제1조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를 다룬다. 유네스코는 또한 유네스코 사업에서 인권을 주류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각 사업에 인권 기반 접근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¹³⁾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 정책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은 지속가능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을 해야 한다:

- i. 세계유산 등재신청부터 관리까지의 전 과정이 인권에 부합하고 인권을 지원하도록 보장한다.
- ii. 세계유산이 인권의 존중과 실현을 위해 최고 기준이 적용되는 모범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권 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 iii. 기존 세계유산 및 신규 세계유산 후보에 대한 심사, 등재신청, 관리, 평가, 보고 과정이 인권 기반 접근방식에 부합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공평한 참여를 통해 관련 기준 및 안전장치, 안내지침 및 운영체계를 개발한다.
- iv. 실효성 있는 인권 기반 접근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협력과 역량 구축을 촉진한다.

13) 「유네스코 헌장」은 다음에서 볼 수 있음: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69/226924e.pdf#page=6>; 유네스코의 2030 「인권 전략」 (Strategy on Human Rights)은 다음에서 볼 수 있음: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45734>.

원주민과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자문을 구하고, 참여시키기

21. 「세계유산협약」은 “(협약의) 이행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 증대”를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¹⁴⁾로 삼고 있다(결정문 31 COM 13B). 세계유산위원회는 특히 세계유산에 대한 의사결정,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서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효과적이고 공평한 개입과 참여를 장려하고, 이들 지역에 위치한 세계유산의 등재신청, 관리, 보고에 있어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한다(결정문 35 COM 12E). 국제기준¹⁵⁾에 따라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이 협약의 이행 과정에 충분히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을 이룬다.
22. 「세계유산협약」의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은 다음을 해야 한다:
- i. 세계유산의 등재신청 및 관리 과정에 원주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안내 및 운영 체계를 개발한다.
 - ii. 세계유산 등재신청, 관리 및 그와 관련된 정책적 조치가 원주민의 영역, 토지, 자원, 생활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주민과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사전 공지를 통해 자유로운 동의를 구하며, 공평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한다.¹⁶⁾
 - iii. 원주민과 지역공동체가 공정한 거버넌스 운영 방식, 협력적 관리 체계를 주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그 메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 iv. 세계유산 관리 체계 안에서 보편적 가치와 지역적 가치를 모두 인식하여, 원주민과 지역사회가 유산에 대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활동을 지원한다.

성평등 달성

23. 성평등은 유네스코의 양대 글로벌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다.¹⁷⁾ 또한 「유네스코 성평등 우선순위 실행계획, 2014-2021」¹⁸⁾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유네스코 운영기구의 규제적 관리 수단이 “유산 분야에서

14) 협약 이행 촉진을 위한 5대 전략목표(“five C’s”) 중 5번째 목표(the fifth ‘C’).

15) 2007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과 같은 것으로 이는 다음에서 볼 수 있음: http://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DRIPS_en.pdf.

16) 특히 세계유산 지정 절차에 관해서는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23항 참조.

17) “아프리카 우선원칙”(Priority Africa)은 유네스코의 두 번째 글로벌 우선순위다.

18) ‘UNESCO Priority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4-2021’.

젠더 감수성과 젠더 반응성을 갖춘, 젠더 변혁적 정책과 활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2015년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하나다.¹⁹⁾ 따라서 당사국은 다음을 해야 한다:

- i. 세계유산 등재신청의 전 과정에 걸쳐, 특히 등재신청서의 내용과 그 준비 과정에서 성평등을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 ii. 세계유산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보장한다.
- iii.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가운데 협의하고, 배제 없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리더십과 대표성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 iv.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유산 내 젠더에 기반한 전통적 관행, 예를 들어 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및 참여와 관련된 관행에 있어서, 성평등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투명한 협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모든 집단의 전적인 동의를 얻도록 한다.

포용적 경제발전

24. 일반적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서 세계유산은 빈곤을 완화하고, 소외 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한다.²⁰⁾ 「세계유산협약」은 빈곤 퇴치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이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웰빙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형태의 포용적이고 공평한 경제발전,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 수익 창출 활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²¹⁾

성장, 일자리, 수입, 생계의 보장

25. 세계유산의 관리 및 보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면서, 포용적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생계를

19) 특히 유산과 관련된 중요한 또다른 참고자료로 유네스코가 발간한 2014년 보고서 「성평등: 유산과 창의성」(Gender Equality: Heritage and Creativity)을 참고할 것. 이 보고서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uis.unesco.org/sites/default/files/documents/gender-equality-heritage-and-creativity-2014-en_1.pdf.

20) 이는 2013년 5월 항저우선언 「문화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에 두기」(Placing Culture at the He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뿐만 아니라,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2013년 유엔 총회 결의안(A/RES/68/223)에서 분명히 인정한 것이다. 각주 11번을 참고할 것.

21) 모든 경제활동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원유, 가스, 광물자원 채굴 산업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37COM 7(제8항)]을 통해 모든 협약 당사국들과 주요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세계유산 지역 내 채굴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함께, 유산지역에 위치한 채굴회사가 이 협약의 제6조에 따라 세계유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접근제한’(No-go)의 책임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계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및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 i.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를 위해, 완전한 고용과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보장한다.
- ii.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를 위해 적정 수준의 소득과 지속가능한 생계를 창출한다.
- iii. 세계유산 안팎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확실히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협력관계, 경제적 인센티브, 부문 간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 시장 메커니즘과 공공정책 간 균형을 유지한다.

경제 투자 및 양질의 관광 촉진

26. 세계유산은 중요한 여행지로, 적절하게 관리된다면 포용적 지역경제발전,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구상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관광 개발에는 세계유산 안팎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공평한 경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²²⁾ 이러한 이유로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을 해야 한다:

- i. 세계유산 지역 안팎에서, 그 지역의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고, 지역의 지식체계와 기반시설을 보존하며,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및 개인이 투자의 일차적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공평한 경제 투자를 개발하고 증진한다.
- ii. 관광 활동과 비관광 활동 간 경제적 다변화를 촉진하고 다른 성장 요소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안팎에서 지역적으로 추진되는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 경영을 장려한다. 이는 또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다.
- iii. 관광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일부를 세계유산 지역 안팎에서 유산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재투자한다.
- iv. 세계유산과 관련된 관광 사업의 승인 이전에,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문객 관리계획을 채택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v. 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장인기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개발을 촉진한다.

22) 이는 또한 유엔세계관광기구가 1999년 채택한 '세계관광윤리강령'(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에 부합하는 것이고 2001년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것이다. 이 윤리강령의 제4조는 "관광은 인류 문화유산을 이용하고 그 유산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5조는 "관광이 지역 모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역량구축, 혁신, 현지 기업가정신의 강화

27. 당사국은 포용적 경제발전이 세계유산을 비롯해 관련 문화산업과 창의산업 및 무형유산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에 기반한’ 장기적 책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i.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경제적 혜택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교육 및 역량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ii. 지역의 문화 및 창의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유산과 관련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기회를 파악하고 증진한다.

평화와 안보의 증진

28. 지속가능발전과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은 전쟁과 내전, 그 밖의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 「세계유산협약」은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교량의 건설’이라는 유네스코의 확고한 사명의 핵심적 부분이다. 따라서 1954년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협약」(1954년 「헤이그협약」)과 협약 당사국들이 비준한 2개의 부속 의정서(1954년 제1차 의정서와 1999년 제2차 의정서), 그리고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2003년)과 무력충돌 시 문화재를 보호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당사국은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통해 당사국 간, 그리고 당사국 내에서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9. 당사국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년)을 상기하면서, 많은 세계유산 지역 안팎에서 문화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산 보존 및 관리 전략에 있어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²³⁾ 또한 당사국은 평화와 안보는 분쟁, 차별 및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해, 인권 존중, 실효성 있는 사법 체계, 포용적 정치 과정, 분쟁 예방 및 해결, 분쟁 후 복구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3) 이 문제에 관련해 유네스코가 채택한 부가적 정책문서로는, 1966년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과 1995년 「관용의 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on Tolerance)이 있다. 각 문서는 다음 각각의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1)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147&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2)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51830>.

분쟁 예방 보장

30. 당사국은 세계유산목록의 작성 및 기존 등재유산의 관리를 비롯한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이 당사국 간, 그리고 당사국 내부의 분쟁을 방지하고 세계유산 지역 안팎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도록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을 해야 한다:
- i. 세계유산 및 좀 더 넓은 그 주변 환경의 보전 및 관리가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가 보유한 전통적 분쟁 해소 방법을 바탕으로—수행하는 연구를 포함한, 학술 연구 및 연구 방법을 지원한다.
 - ii. 다른 지역, 특히 인접 당사국에 속하는 유산에 대한 이해와 존중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역 고유의 세계유산을 확인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포괄적 접근법을 개발한다.
 - iii. 예를 들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반영하는…”(세계유산 등재기준 II) 유적지처럼, 당사국과 다른 문화공동체 간 유익한 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이 있는 유산을 잠정 목록에 추가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하는 것을 고려한다.
 - iv. 특히 분쟁과 관련된 지역의 유산을 등재신청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다양한 지역공동체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계유산을 해석할 때에는 비교문화적으로 세심하게 접근한다.
 - v. 적절한 경우에는, 공동 유산을 공유하는 인접 또는 비인접 당사국 간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국경/국가를 초월하는 유산을 확인, 등재신청 및 관리를 하고 멘토링을 지원하도록 한다.

분쟁 중 유산의 보호

31. 무력 분쟁 중, 당사국은 유산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목적으로 세계유산과 그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한다. 또한 그러한 유산을 겨냥한 어떠한 적대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다음을 해야 한다:
- i. 만약 당사국이 개입되어 무력충돌이 빚어질 경우, 당사국의 군대가 1954년 「헤이그 협약」 및 2개 부속 의정서의 규정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관습법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ii. 군사 계획 및 훈련 프로그램에서 세계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고려하도록 보장한다.

분쟁 해결 촉진

32. 세계유산 및 유산 보존이 분쟁 해결과 평화 및 안보 재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내재적 가능성을 인식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을 해야 한다:

- i. 분쟁 및 소요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갈등 관리 및 협상에 유산 보호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분쟁 후 복구에 대한 기여

33. 분쟁 기간 및 분쟁 후 과도기에 세계유산 및 그 주변 지역은 복구와 사회경제적 재건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을 해야 한다:

- i. 유엔 및 기타 지역 평화유지 활동과 분쟁 이후 재건 구상 및 개입 활동에 있어, 세계유산 및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일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ii.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증진하는 포용적 접근법을 통해 세계유산의 복구를 지원하고, 이러한 조치를 공공 프로그램 및 공공정책에 통합시키는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채택한다.
- iii. 「운영지침」 제86항에 따라 유산의 물리적 속성의 복원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 관련 지역사회의 전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경우에 따라서, 전통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 iv.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관습, 의례 및 축제,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을 비롯해 분쟁으로 손상되었을 세계유산 관련 전통 장인기술의 복원을 촉진한다.
- v. 비상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유산에 관한 문서를 만들어야 하고 이 문서는 안전한 기록물 보관소에 보존한다.

부록 - 정책문에 사용된 핵심용어 (가나다 순)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경제 용어로 표현된 문화적 가치. 세계유산의 대표적 경제적 가치는 사용 가치(시장가치)와 비사용 가치로 구분된다. 비사용가치는 흔히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의 지불 의사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현시 선호도(revealed-preferences) 조사기법에 의해 측정된다.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

경제적 성과를 산출하는 데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유형 및 무형의 자산. 세계유산은 문화자본으로서, 경제적 자원으로 간주된다. 예술 및 공예 산업은 소비재 및 투자재 생산에서 무형의 자원 및 기술을 가공한다.

구조적 조치(structural measures)

위험의 가능한 영향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모든 물리적 구조물, 또는 구조물이나 시스템이 위험 저항성과 복원력을 갖추게 하는 공학기술의 적용을 의미한다.

국가를 초월하는 유산(transnational property)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2013년)은 ‘국가를 초월하는’(transnational)이라는 단어와 ‘국경을 초월하는’(transboundary)이라는 단어를 같은 뜻으로 보지만, 그 개념을 그 이상 규정하지는 않는다. ‘국경을 초월하는’이라는 단어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해당 유산이 국경선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 적용된다. ‘국가를 초월하는’이란 단어는 접경의 경우를 다루긴 하지만, 또한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은 협약 당사국들이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련되는 경우도 포괄한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이란 유기적 구조로 이뤄지는 신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창의성 및 혁신 차원에서 개인의 주도적 능력이 강조된다.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 경제발전을 진작할 수 있도록 소액금융(micro-finance)과 기초훈련을 통해 예술 및 공예기술, 무형의 기술, 지역 전문성 등을 육성한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상당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 기후 가변성에 더하여, 지구의 대기 구성을 변화시키는 인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해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유엔기후변화협약」 제1조).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of climate change)]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고 흡수원을 늘리기 위한 인간의 개입[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4].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재해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재해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의 복구와 유산의 복원을 지원한다는 원칙.

복원력(resilience)

용수철이 다시 튀어오르는 성질과 관련해 물리학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 이 용어는 최근 수십 년간 다른 영역에도 적용돼, 변화에 직면해 지속성과 적응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개인과 집단이 스트레스와 역경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생태학에서는 생태계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기능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일회성 좌절이나 시간에 걸쳐 누적된 고난으로 인한 실패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복원되는 힘을 표현하는 용어로 점점 더 많이 쓰인다.

기후변화 및 재해 위험 감축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용어는 “위험에 노출된 시스템, 사회, 또는 지역이 필수적인 기본구조와 기능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을 비롯해, 위험의 영향에 저항하고, 그 영향을 흡수하고 조정하며, 그 영향으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유엔 국제재해경감전략(UNISDR), 2009].

비교문화적 감수성(cross-cultural sensitivity)

“비교문화적 감수성”은 인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문화에 뿌리를 둔 상황, 맥락, 행동을 해석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적절한 반응을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 자신의 문화에 얽매인 해석(즉, 좋다/나쁘다, 옳다/그르다)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반응 능력은 비교문화적 지식과 인식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

[출처: Kwintessential. 온라인: <http://www.kwintessential.co.uk/cultural-services/articles/cross-cultural-understanding.html> (2015년 3월 9일 접속)].

비구조적 조치(non-structural measures):

물리적 구조물과 관련 없는, 특히 정책, 법률, 대중의 인식 제고,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위험과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식, 관행 또는 합의를 이용하는 모든 조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사회통합은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이자 결과다. 사람들은 성별, 민족, 이주민 또는 난민의 지위, 종교 등으로 인해 다양한 발전의 과정 및 기회,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 사회통합은 웰빙과 공동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그 같은 불리한 입장을 인식하고 해결한다.

삶의 질(quality of life)

소득 및 생산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 아닌 사회적 지표(예: 투표, 집회 또는 정당 참여 가능성)에 의해 측정되는 인간 웰빙의 개념(『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 67, United Nations, New York, 1997).

생태계 서비스 및 혜택(ecosystem services and benefits)

사람들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식량과 물 같은 공급 서비스; 홍수와 질병 관리 같은 조절 서비스; 정신적, 오락적, 문화적 혜택 같은 문화 서비스; 양분순환(養分循環)처럼 지구의 생명 조건을 유지하는 지지 서비스가 포함된다[유엔환경계획(UNEP)].

성평등(gender equality)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과 기회. 이는 서로 다른 여성 집단 및 남성 집단의 다양성을 인식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이해관계와 욕구,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평등은 인권 원칙이자 지속가능한 인간 중심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또한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유네스코 ‘성평등 실행계획’(GEAP)].

안보(security)

이 개념은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공공질서 및 안보; 위험 또는 위기로부터의 안전 또는 자유; 범죄, 공격, 방해행위, 또는 첩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예방 조치; 걱정, 불안, 또는 의심으로부터의 자유; 확고한 자신감; 재정적 근심이나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뜻한다.

인권(human rights)

인권은 우리의 국적, 거주지, 성별, 민족, 피부색, 종교, 언어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권리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러한 권리는 상호 관련이 있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보편적 인권은 종종 조약, 국제관습법, 일반원칙 및 기타 국제법에 기반한 문서의 형태로 법에 의해 표현되며 보장된다. 국제 인권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거나 특정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2014).

인권기반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유엔 체제에서, 인권의 주류화는 다음을 의미한다:

1. 개발협력의 모든 프로그램, 정책, 기술 지원은 「세계인권선언」과 그 밖의 국제인권문서에서 규정된 인권의 실현을 증진해야 한다.
2. 「세계인권선언」과 그 밖의 국제인권문서에 기재된, 또 그에 기인한 인권 기준 및 원칙은 모든 개발협력 및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에서 지도 원칙이 되어야 한다.
3. 개발협력은 ‘의무 부담자’가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 보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유엔개발그룹(UNDG)의 프로그램 그룹이 승인한 「개발협력의 인권기반 접근에 관한 공통의 이해 선언」).

재해(Disasters)

공동체나 사회가 자체 자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하는, 광범위한 인적, 물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 손실과 영향을 수반해 공동체나 사회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건[유엔 국제재해경감전략(UNISDR), 2009].

(재해) 감축[mitigation (of disaster)]

재해 위험, 재해에 대한 노출, 재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통해 물리적 위험(인간이 초래한 위험 포함)의 잠재적 악영향을 축소하는 것[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4].

재해 위험 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재해에 노출될 위험의 경감, 사람과 자산의 취약성 감소, 토지와 환경의 현명한 관리, 재해사고에 대한 대비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해, 재해의 인과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 재해 위험을 줄이는 개념 및 실천[유엔 국제재해경감전략(UNISDR), 2009].

젠더(gender)

젠더란 무엇인가: ‘여성됨/남성됨’에 주어지는 사회적 의미.

여성 또는 남성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특성이 아닌—사회적 특성.

젠더의 기능은 무엇인가: 여성과 남성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존재여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 그 영역을 설정한다. 여성과 남성의 행동, 역할, 기대, 자격을 형성하고 결정하며, 그와 관련된 규칙, 규범, 관습, 관행을 규정한다.”[유네스코 ‘성평등 실행계획’(GEAP)].

젠더 감수성과 젠더 반응성을 갖춘, 젠더 변혁적 접근법

(gender sensitive, gender responsive and gender transformative approaches)

젠더 감수성 - 관심을 필요로 하는 남성과 여성 간 차이와 불평등에 대한 인정.

젠더 반응성 -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 욕구, 능력, 기여를 다루는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그 이상의 조치.

젠더 변혁 - 모두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의 편향되고 차별적인 정책, 관행,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및 구상.”[유네스코 ‘성평등 실행계획’(GEAP)].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 세대가 그들 자신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브룬트란트(Brundtland)위원회가 정의하고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다자간 합의로 채택된 개념). 이 포괄적인 이상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지난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이 주어졌다. 2002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는 ‘환경, 사회, 경제’라는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강화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축’ 개념이 도입됐다. 2030 의제와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정책 초안은 평화와 안보 분야를 보완하여 보다 넓은 유엔 차원에서 승인한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 안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영역을 채택했다(2030 의제 제2항 및 제35항).

지속가능한/지속가능성(sustainable/sustainability)

이 형용사는 유산 부문과 그 외 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며, 때로는 실제 의도된 의미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단어의 보다 정교한 의미는 원래 환경과학 분야에서 나왔다. 이 단어는 한계 내에서의 생존과 생존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경제, 사회, 환경 간의 상호연결, 자원과 기회의 공평한 분배라는 개념까지 포괄한다.

이 단어는 보다 좁은 의미로는 장기간 지속하거나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적절한 동의어로는 ‘maintainable’(유지 가능한)과 ‘tenable’(견딜 수 있는)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시스템 및 과정의 지속성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된다.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방문객, 산업, 환경,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하며,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관광.”[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평화(peace)

어떤 국가나 국가 집단, 또는 세계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사람 간, 집단 간에, 특히 개인 관계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는 상태; 민간 소요와 공동체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공공질서 및 안보.

포용적 경제발전(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에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포용적인 경제성장이 포함된다.”(「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실현」, 29쪽). 포용적 경제발전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우선시한다. 고용, 소득, 복지의 측면에서 측정된 바와 같이, 포용적 경제발전은 거시적 경제성장과 형평성을 양립시킬 수 있다. 포용적 경제발전은 또한 자원의 현지 활용과 세계시장의 공정 경쟁을 필요로 한다.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

Policy to integrate a sustainable development perspective
within the process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발행일 | 2020년 12월 21일

발행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인 | 김광호

번역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 www.unesco.or.kr

이메일 | cul.team@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ED-2020-MP-2